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국방중소·벤처기업 성장지원)”을 “(국방중소·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”을 “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성장지원”을 “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조제2항제4호”를 “법 제10조제2항제10호”로, “사항”을 “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국방기술품질원
3. 국방과학연구소
4. 중소기업진흥공단
5. 그 밖에 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4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5.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관

② 제1항에 따른 선도연구기관(이하 “선도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
2.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
3.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관

③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
2.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④ 선도연구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 현황, 연구개발 실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계획 수립 지원

13.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사업의 기획·평가·관리 등

14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선도연구 업무 지원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국방중소·벤처기업 성장 지원)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 방중소·벤처기업의 <u>성장을 지</u> <u>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</u>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	제12조(국방중소·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성장 및 기</u> <u>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</u> - ----- -----.
1. 국방중소·벤처기업 <u>성장지</u> <u>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</u>	1. ----- <u>성장 및</u> <u>기술혁신 지원</u>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사항</u> ”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----- ----- <u>사업</u> 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<u>기관</u> 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 다.
	1. <u>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</u> <u>방자치단체</u>
	2. <u>국방기술품질원</u>
	3. <u>국방과학연구소</u>
	4. <u>중소기업진흥공단</u>

<신 설>

5. 그 밖에 국방중소·벤처기업
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·시
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- 제12조의2(국방중소·벤처기업
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)
-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·
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
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
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기관을 선도연구기관
으로 지정할 수 있다.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
른 학교
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
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
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
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
연구기관
 3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
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
따른 특정연구기관
 4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
사
 5.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
하는 기관

② 제1항에 따른 선도연구기관(이하 “선도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
2.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
3.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관

③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
2.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④ 선도연구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 현황, 연구개발 실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

	<u>· 절차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
제34조(업무의 위탁)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	제3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1. ~ 11. (생략)	-----
<u><신 설></u>	-----
	-----.
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계획 수립 지원</u>
	<u>13.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사업의 기획·평가·관리 등</u>
<u><신 설></u>	<u>14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선도연구 업무 지원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13